

#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6. 15) 상정
- 제1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6. 15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도 욱)

가. 제안이유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「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」에 따라 2009. 11. 1.부터 본격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시된 행정안전부의 「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」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)
-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부과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하고, 지급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변경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5호)
-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함(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특이사항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#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1년 이상”을 “2년 이상”으로 하고,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1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#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제594호
의결 년월일	2010. 6. 18 (제161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6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「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」에 따라 2009. 11. 1.부터 본격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시된 행정안전부의 「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」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).
- 나.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부과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하고, 지급 기준을 100분의 10으로 변경 규정함(안 제4조제1항제5호).
- 다.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함(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).

##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1년 이상”을 “2년 이상”으로 하고,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1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급대상)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1. ~ 5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1. ~ 4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5. 납세의무 발생일(등기일을 포함한다)부터 <u>1년 이상</u>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<u>100분의 5</u>                      6. ~ 7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6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5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2년 이상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u>100분의 10</u>                      6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8.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<u>100분의 10</u>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<관계법령 발췌서>

### ○ 지방세법

제56조(징수촉탁)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,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
2. 체납처분비

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,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,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